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새로운 자료 확보 시 피해진상 재조사 신설 등 >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9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새로운 자료 확보 시 행정안전부의 업무 수행 범위 규정	3
2.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새로운 자료 확보 시 피해진상 재조사 신설	8
3. 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의 의무 구체화	11
4. 위로금등의 신청 조건 추가 및 기간 변경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후덕의원 등 52인
2. 제 안 일 : 2024. 9. 23.
3. 회 부 일 :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였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12월 31일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음.

한편, 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된 근로자 등을 태우고 일본에서 귀국하다 침몰한 우키시마호 희생자의 경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근거 자료 부재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를 우리나라 정부에 제공한 바 있어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 고통을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및 제25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새로운 자료 확보 시 행정안전부의 업무 수행 범위 규정(안 제19조제5항)

개정안은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u>

현행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애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2012년 2월 29일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되,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0년 4월 20일에 활동을 시작하여 희생자 결정을 완료하고 2015년 12월 31일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음.

<위원회 개요>

- (설립목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지급 등
 - ※ 피해진상규명 대상: 국내외 강제동원 / 위로금 지급대상: 국외강제동원
- (주요업무) 피해진상조사, 위로금 등 지급, 피해관련 자료분석, 유해봉환 및 추도사업 등
- (위원구성) 총 11명(위원장 1, 정부위원 3, 민간위원 7)
- (인력/예산) 78명(공무원 35, 자체 채용 43), 310억원('15년 예산)
 - ※ 존속기간(약 6년) 동안 총 7,273억원(운영예산 1,155, 위로금등 6,118) 소요
- (존속기간) 2010.4.20. ~ 2015.12.31.

※ 자료: 행정안전부

<위로금 등 지급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위로금		지원금	
			사망·행불	부상	미수금지원금	의료지원금
접수·처리건수		112,671	20,682	33,278	33,329	25,382
지급결정	건수	72,642	17,880	13,993	16,228	24,541
	금액	645,256	360,073	102,185	52,182	130,816
실지금액	금액	639,690	355,785	101,442	51,647	130,816

※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이후 국외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되어 신청 등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재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특히, 일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8월 24일 귀국하려던 조선인 노동자를 태운 채 침몰한 우키시마호 희생자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이 승선자 명부를 제공함에 따라 우키시마호 침몰 희생자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행정안전부가 승계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위원회의 업무>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제22조(신고 및 신청의 각하)
제23조(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제24조(신고 및 신청의 기각)
제25조(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제26조(결정 등)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제28조(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제29조(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제30조(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다만, 종료된 위원회를 부활시켜 진상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대
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024. 10. 10., 의안번호
제4642호)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은 조사를
어떻게 수행할지 수행방식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처리속도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이 있는 반면,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 수용성 측면
에서는 위원회 부활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현행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은 폐지된 위원회의 후속 업무 처리를 위해서 자료 분석, 소
송 수행, 유보액 지급, 유해 봉환 등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승계한 것
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성과 객관성이 필요
한 사항까지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타
과거사 관련 법률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 결
정 및 위로금·보상금 등 지급 결정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새로운 자료 확보 시 피해진상 재조사 신설(안 제25조의2)

개정안은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나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대한 각하, 강제동원 피해의 신고나 신청에 대한 기각, 강제동원 피해 등에 대한 판정 불능결정 이후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5조의2(피해진상 재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각하 결정, 제24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제25조에 따른 피해판정 불능결정 이후 제19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나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음.

1. 신고나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나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고나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 또는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종전의 신고 또는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현행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강제동원 피해의 신고나 신청을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각하도록 하고 있음.

1.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에 더하여, 현행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조사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가 피해자 및 친족이 피해신고를 하였던 경우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피해판정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 결정 이후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

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 재조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여 진상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나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대한 각하, 강제동원 피해의 신고나 신청에 대한 기각, 강제동원 피해 등에 대한 판정 불능결정 이후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행정안전부가 승계하였다는 점, 강제동원 피해 재조사를 통해 희생자 등에 대한 고통을 치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종료된 위원회의 각하·기각·판정불능 결정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문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한 업무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의 의무 구체화(안 제23조제4항)

개정안은 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자료의 공개·열람·이관, 관계 기관과 해당 국가 또는 제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발생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관하여 성실히 교섭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① ~ ③ (생략)	제23조(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u>성실히</u>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 ----- ----- ----- <u>자료</u> <u>의 공개·열람·이관, 관계 기관과</u> <u>해당 국가 또는 제3국이 공동으로</u> <u>참여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u> <u>해 발생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u> <u>에 관하여 성실히</u> -----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해진상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관계인,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해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개정안은 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자료의 공개·열람·이관, 관계 기관과 해당 국가 또는 제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발생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관하여 성실히 교섭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된 국외자료에 대한 관계 기관 등의 의무를 구체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외국과의 교섭은 신뢰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에 교섭범위를 명시하는 것은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외국과의 교섭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외국과의 교섭은 신뢰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므로, 법에 교섭 범위를 명시하는 것은 국가에 지나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위로금등의 신청 조건 추가 및 기간 변경(안 제27조제2항)

개정안은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나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가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 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① (생략)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u>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u> 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u>60일</u>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 ----- <u>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u> ----- ----- ----- <u>180일</u> ----- -----.
<신설>	1. <u>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u>
<신설>	2. <u>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가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나,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

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위로금 지급이 완료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 재조사에 따른 위로금등의 신청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여 위로금등의 신청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나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가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새로운 자료 발견에 따른 희생자 추가 결정 시 위로금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기간을 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변경하려는 바, 신청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위로금 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위로금의 조속한 지급을 통한 보상절차의 조기종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개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서는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기간 연장이 적절한 것인지, 적절하다면 연장에 따른 적정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이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결정은 전문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한 업무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타 과거사 관련 법률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에서 위로금·보상금 등 지급 결정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